

육아정책소식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법적근거 마련 추진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할청이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8월 12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본 개정안에서의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7호에 의거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는 엄히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 여부가 모호할 수 있다. 승용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8월 11일자 보도자료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근거가 명확해져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제고되어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0-2세 유치원 취원 2016년 시범사업 후 단계적 실시

국무조정실은 2015년 9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의 단계적 실시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취원연령의 차이로 자녀가 다른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공급부족 지역의 영아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안)」을 마련하고,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¹⁾에서 논의·확정하였다. 2016년에 시범사업²⁾을 실시하고 향후 관리부

1)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정부위원 7명(국무조정실장, 국무2차장, 기재교육복지행자여가부 차관), 민간위원 6명(학부모, 학계, 공익단체 대표), 총 민간 13명으로 구성됨.

처 통합 이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유치원에서 0~2세 취원 허용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내년에 농어촌 등 학부모 불편 해소가 시급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유치원에 0~2세의 취원 허용 시 고려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부처 통합 이후 시범사업결과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0~2세 취원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전국 농어촌 지역 중 29%(417개 읍면동) 지역에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반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중 91%(379개 읍면동)에는 유치원이 설립되어 있는 실정이다. 통합부처에서 운영 평가를 통해 추후 적용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로써 가까운 어린이집이 없어 영아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학부모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실·경보설비 등 설치 의무화

정부는 영유아 안전·보호 및 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기준 정비·통합방안(안)」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신규기관에 우선 적용기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1)에서 논의·확정하였다. 본 방안에서는 시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제점이나 시급한 사안 중심으로 정비하고자 미비한 부분을 중심으로 현실에 기반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영유아의 안전·건강 관련 시설기준은 우선 정비·강화하였으며, 신규기관에 우선 적용하되 안전 기준은 일정기간 유예 후 기존기관에도 적용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실 등 필수시설,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2층 이상) 및 경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기관의 설치부담 등을 고려하여, 20인 이하 어린이집 등에는 교사실 설치 면제, 대체놀이터 허용 등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피난기구, 경보설비 등은 기존의 시설에도 적용하되, 유예기간(1~3년)을 주어 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관계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와 교육·홍보는 2015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시설기준 정비를 영유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고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 확충사업